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980호 2026. 5. 20.(수)

www.gongju.go.kr



선 람	기관위원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8464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공 고】

- 제2026-1537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 제2026-1555호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고 시】

- 제2026-106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36

공 시 송 달 공 고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공 주 시 장

1. 공고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20. ~ 2026. 6. 4.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주시 홈페이지 공고
6. 공시송달 내용
 - 공주시 일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용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진행할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6. 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행위 위치	(아래 7 참고)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소	미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어촌정비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지를 점용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의견제출	기관명칭	공주시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김효민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건설과)			전화번호	041-840-7644
	전자우편 주소	hm060705@korea.kr			팩스번호	041-840-3731
	제출기한	2026년 6월 1일(월) 까지				

7. 공시송달 대상

연번	성명	주소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리카드
1	미상	미상	농어촌정비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위반	위치	사곡면 호계리 686-2번지(73-3번지선)	344
2	미상	미상		위치	유구읍 만천리 628번지(255-18번지선)	171
3	미상	미상		위치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910-7번지(345-5번지선)	178
4	미상	미상		위치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924번지(657-1번지선)	181
5	미상	미상		위치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661번지(105번지선)	192
6	미상	미상		위치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515번지(324-1번지선)	349
7	미상	미상		위치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416번지(91-10번지선)	350
8	미상	미상		위치	계룡면 월곡리 406번지(35-14번지선)	351
9	미상	미상		위치	계룡면 월곡리 406(35-5번지선)	352
10	미상	미상		위치	계룡면 월곡리 406번지(35-3번지선)	353
11	미상	미상		위치	계룡면 상성리 419번지(339-2번지선)	354
12	미상	미상		위치	계룡면 상성리 419번지(344-7번지선)	355
13	미상	미상		위치	계룡면 월곡리 406번지(35-11번지선)	356
14	미상	미상		위치	계룡면 상성리 419번지(345-5번지선)	357
15	미상	미상		위치	반포면 송곡리 466-8번지	225
16	미상	미상		위치	반포면 마암리 57	231
17	미상	미상		위치	반포면 학봉리 793-3번지(22번지선)	248
18	미상	미상		위치	반포면 학봉리 793-3번지(20번지선)	249
19	미상	미상		위치	우성면 목천리 1046번지(1025-7번지선)	358
20	미상	미상		위치	우성면 반촌리 374-2번지(28-2번지선)	359
21	미상	미상		위치	우성면 반촌리 376번지(174번지선)	360
22	미상	미상		위치	우성면 죽당리 504-2번지(산 45-1번지선)	361
23	미상	미상		위치	우성면 오동리 229번지(216-1번지선)	362
			위치	우성면 동곡리 327번지(321-8번지선)	363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건설과(☎041-840-7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보내실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1, 공주시청 건설과 농촌기반팀

-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위치도 및 현황사진(344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171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178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181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192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349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350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351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352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353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354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355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356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357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231번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248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249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358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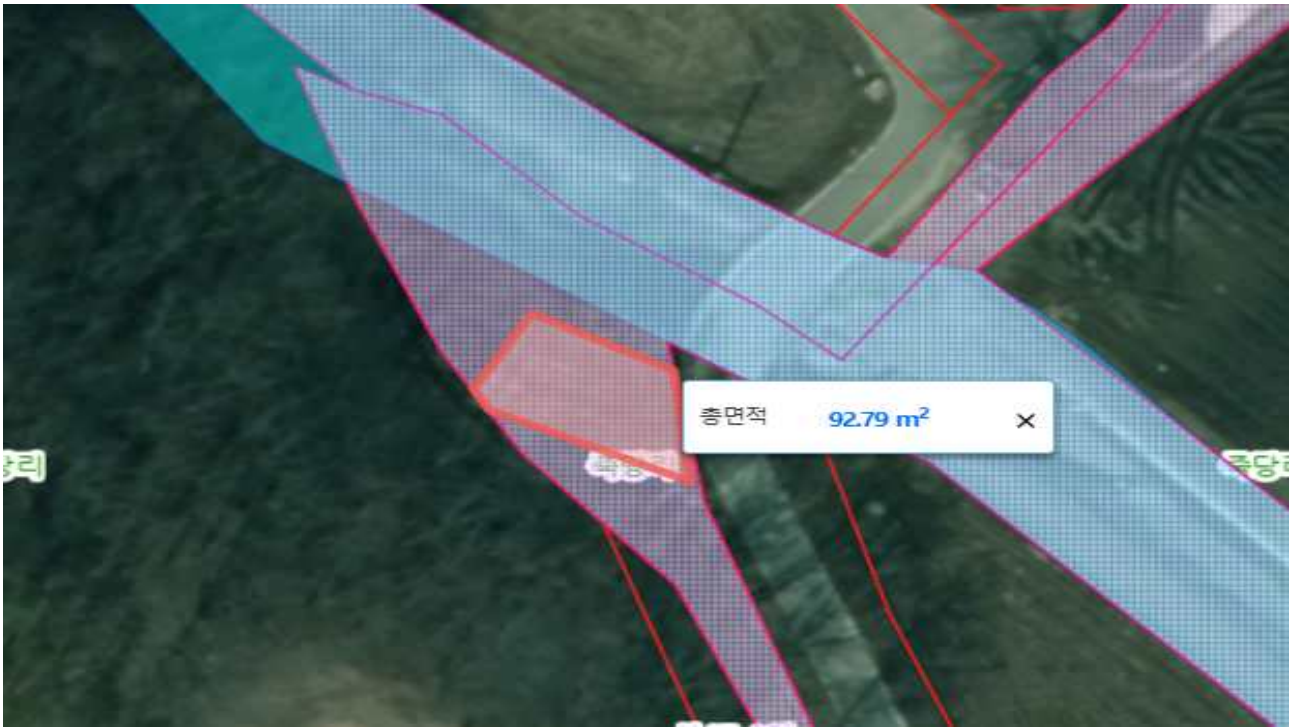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사진(359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360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361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362번)



위치도 및 현황사진(363번)



공주시 공고 제 2026 - 1555호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대중교통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 신설 및 기존 조례를 명확하게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 조례명 변경 →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목적, 정의 조항 내 상위법 일부 개정(안 제1조 ~ 제2조)
- 재정지원사업 신설 및 기타 자구 수정(안 제3조 ~ 제4조)
- 준용 조항 신설(안 제6조)
- 별지 서식 기타 자구 수정

3. 입법 예고기간 : 2026. 5. 20. ~ 2026. 6. 9.(20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교통과 대중교통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840-7762, FAX: 041-840-2328

5.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공주시 교통과 대중교통팀(☎ 041-840-7762)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32552)

☐ FAX : 041-840-2328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또는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
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나.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매년 적자 손실
액 산정용역 또는 기타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에 대한 검증자료를 운송
원가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금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주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우리 시 도로명 주소 부여·변경·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5. 15.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가나무정길 74-10 외 22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6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2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25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05. 15.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